

곰사육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6년 12월 6일 (수) 14:00 - 16: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녹색연합 / WSPA



녹색연합 135-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번지
대표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회원전용전화: 02-745-5001~2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일정

인사말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좌장 백용해 (녹색연합 연안보존위원장)

구 분	내 용	발 제 자	시 간
발제1	한국 곰사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유태철 서기관 (환경부 자연자원과)	2:00~2:15
발제2	사육곰 농가 입장에서 바라본 곰사육정책	윤영덕 총무 (전국사육곰협회)	2:15~2:30
발제3	곰사육정책의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김혜애 실장 (녹색연합 정책실)	2:30~2:45
발제4	곰사육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사례	데이브 에스탐 (WSPA 야생동물팀장)	2:45~3:00
휴식			3:00~3:15
토론1	CITES와 한국의 곰사육정책	김효정 사무관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3:15~3:30
토론2	야생동물의 상업적 이용과 곰사육정책	조희경 대표 (동물자유연대)	3:30~3:45
토론3	언론에서 바라보는 곰사육정책	강찬수 기자 (중앙일보)	3:45~4:00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목 차

- 한국 곰사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 유태철 서기관(환경부 자연자원과)
- 사육곰 농가 입장에서 바라본 곰사육정책 ----- 운영덕 중무(전국사육곰협회)
- 곰사육정책의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김혜애 실장(녹색연합 정책실)
- 곰사육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사례 ----- 데이브 에스탐(WSPA 야생동물팀)
- CITES와 한국의 곰사육정책 ----- 김효정 사무관(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야생동물의 상업적 이용과 곰사육정책 ----- 조희경 대표(동물자유연대)
- 언론에서 바라보는 곰사육정책 ----- 강찬수 기자(중앙일보)
- 첨부문서(사육곰 관리지침) ----- 환경부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에 공존하는 두 가지 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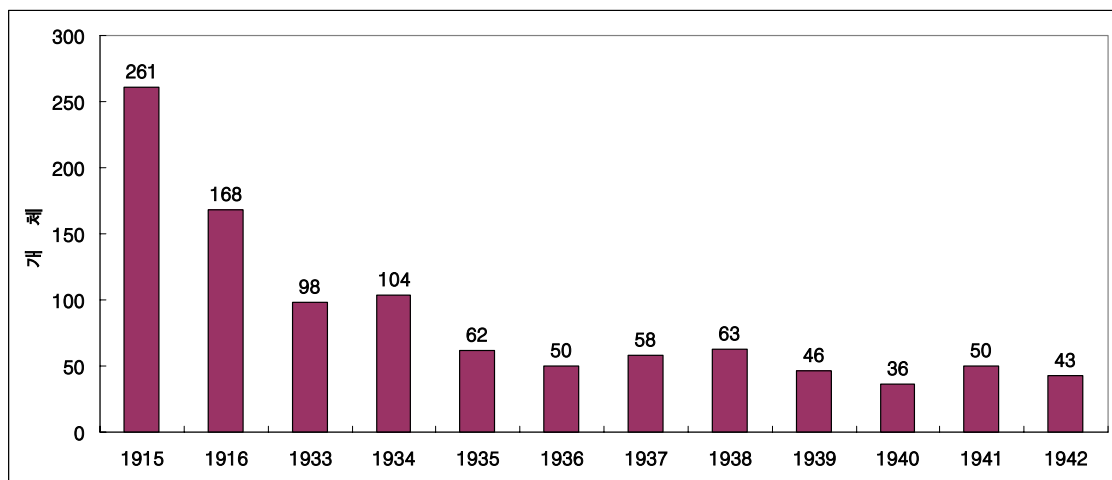
유태철 (환경부 자연자원과 서기관)

1. 한반도의 반달가슴곰

한반도에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nus)은 약110,000~10,000년 전 홍적새부터 서식하기 시작하여 한반도 전역 산림지역에 분포하였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반도 북부 고지대에 많은 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있으며, 우리나라도 반달가슴곰이 많이 서식하였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에 ‘해수구제’ 라는 명분으로 많은 곰이 계획적으로 포획되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915년부터 1942년까지 27년 동안 총 1,039개체의 곰이 포획되었다

연도별로 포획은 해수구제 첫해인 1915년에 261개체, 이듬해인 1916년 168개체, 1933년 98개체를 포획하였고, 이후 해가 갈수록 포획수가 감소하여 1940년에는 36개체가 포획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집계된 수량으로 실제 포획된 개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만큼 많은 야생곰이 우리나라에 서식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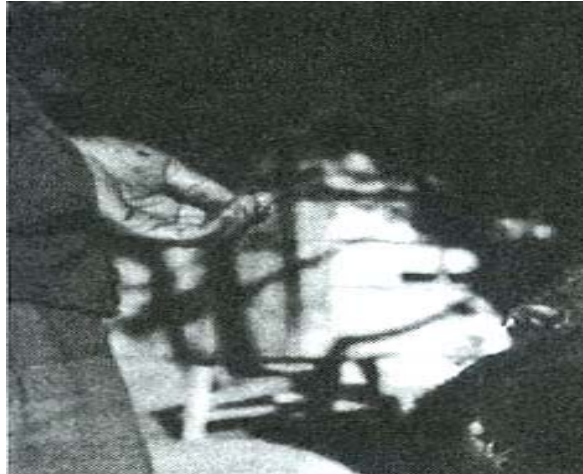
해방 및 6.25동란 이후에도 한반도의 곰은 상당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평안북도 묘향산, 자강도 회천, 양강도, 함경북도 무산과 지리산, 금강산, 백두산과 설악산, 오대산 및 지리산 등지에 적지 않은 수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은 월간지 “사람과 산” 의 1991년 9월호에 실려 있는 1960년대 내설악 입구인 용대리로 내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은 새끼 반달곰을 마을주민이 잡아 기르던 것으로 반달곰이 등산객에게 재롱을 피우는 사진이다. 이처럼 동화 같은 사연이 말해 주듯이 그 당시만 해도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체군이 생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담사 용대리 새끼반달곰(자료 : 월간 사람과 산, 1991.9)

그러나 70년대까지 전문포수 및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곰 사냥이 계속 이루어져 잔존하고 있던 개체군들은 지역적으로 멸종되거나 멸종 위협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

남한의 지리산을 예로 들면,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반달곰 사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해에 약 40개체의 곰이 포획되는 등 야생곰의 개체감소가 계속되었으며, 이는 사냥이 금지된 1972년까지 지속되었다.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포수들은 많게는 14~36개체부터 작게는 1~3마리를 포획하였다고 한다.



1950년대 말 지리산에서 포수에게 잡힌 반달곰(출처: 자연과 사냥, 1992)

곰의 존속을 위한 최소 개체군의 크기를 60~70개체 정도로 본다면 7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반달가슴곰은 이미 지역적으로 멸종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2.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두 종류의 곰

가. 생태복원을 위한 반달가슴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보신풍조가 만연하면서 밀렵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반달가슴곰의 멸종이 가속화 되었다. 1983년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지리산, 설악산 등지에서 약 56여 개체로 조사되었으나, '01년도 현재는 이보다 적은 약 21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100년간 생존확율이 95%를 넘어야 자체적 생존능력을 가진 개체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개체수는 현재 5~8(추정)마리로서 생존확율이 3%에 불과해 이미 자체적 생존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자체적 생존능력¹⁾ 유지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20마리를 방사해 놓고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멸종위기종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먹이사슬 최상의 단계에 있는 종을 복원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증진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백두대간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Vortes 5 6 마리를 이입한다는 조건으로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안정적인 존속가능성(100 94%) (10 53 | 체)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육곰

우리나라에 곰을 사육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 사육을 허용한 1981년부터 1985년 6월까지이며 농가에서 일본 등으로부터 곰 500여 마리를 수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일부 곰 사육자의 응답채취 모습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내 곰 보호여론 일어나 정부에서는 1985.7.1일자로 곰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게 되었다. 당시 수입된 곰의 용도는 증식 후 외국에 재수출을 하기 위한 용도였으나 외국으로부터 곰의 수요가 없자 경제성이 없는 사육곰은 점차 농가의 애물단지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2006년 현재 전국의 사육곰은 110개 사육장에서 1,604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사육용도는 증식용 91개소 1,423마리, 전시·관람용 19개소 181마리로서 대부분이 증식을 위한 용도이다. 곰의 종류는 대부분이 반달가슴곰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전시를 위한 곰은 대부분이 동물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사육되고 있어 사육환경이 대체로 양호한 반면, 증식을 위한 곰은 농가의 경영난으로 사육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구 분	계	반달 가슴곰	불곰	흑곰	유럽 불곰	아메리카 흑곰	북극 곰	말레이 곰	백곰
계	1,604	1,369	108	102	11	5	4	3	2
증식용	1,423	1,296	30	96	-	-	-	1	-
전시·관람용	181	73	78	6	11	5	4	2	2

2000년 한국곰보존협회에서 곰 사육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곰 1쌍을 사육하는데 초기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시설비²⁾만 약 500만원이 들고, 이후 매년 사료비³⁾로 58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마땅한 수익창출 방안이 없는 사육농가는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육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1999년 2월부터 일정 연령기준에 도달한 곰에 한하여 전통약재 등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고 있다. 당시에는 곰의 종류에 따라 24년~40년으로 연한을 정하였으나, 이는 곰이 자연사하는 시점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2월부터 최초로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에 대하여 10년으로 연한을 다시 조정하였다.

국내 곰 사육이 허용된 지 25년이 지나는 동안 사육곰의 관련법률, 주무부처 및 관리감독기관 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다. 최초에는 산림청에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곰 사육을 허용하였고, 곰 사육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에서 관장하였다. 이후 정부의 기능 조정에 따라 1999.9월 동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환경부는 2004년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2005.2.10 시행)과 2005.3월 「사육곰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전국의 사육곰을 관리를 하고 있다.

연 도	관 련 법 률	주 무 부 처	관 리 감 독
1967~199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산림청	자치단체
1999~200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환경부	자치단체
2005~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유역() 환경청

「사육곰 관리지침」은 사육곰의 개체관리, 곰 사육시설의 환경개선 유도, 유역(지방)환경청의 곰 사육자 관리감독과 각종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육곰의 개체관리는 곰 사육자와 (지방)환경청에서 사육곰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토록 하여 불법도축 등을 방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확실한 개체관리 방안으로 전자칩 주입사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까지 기존의 모든 사육자는 일정한 사육면적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규 사육자는 사육 개시이전에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향후 더 이상 사육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곰 사육장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환경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곰의 폐사·출생신고, 용도변경 승인처리 등 각종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를 통해 25년 이상 지속된 사육곰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2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곰 사육자를 대변하는 전국사육곰협회는 가축으로 이관을 통해 곰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2) 사육시설 : (2 4㎡) m²)

3) 사료비(1) : 291,200 (52 / / ×5,600 / =291,200 / /)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간단체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곰 사육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육곰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여 인공사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곰 보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육곰이 억제 또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전 통약재로서의 국내 응답 수요와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사육곰 정책은 신규 사육장의 확산 억제 및 용도변경 완화(24년→10년)를 통해 사육곰의 점차적으로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은 제도 시행 2년째로 실적이나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향후 사육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사육곰 정책에 대한 사육곰 농가의 입장

- 김무웅(전국사육곰협회장)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수입허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가소득은 고사하고 곰사육농가에 엄청난 고충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육곰의 수입이 금지된 지 20년이 넘도록 각종 법규에 묶어두어 곰사육 농가의 손실만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육곰은 기타 가축으로 분리 되어야 합니다.

○ 사육곰은 야생 곰과는 분리 하여 관리 되어야한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 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위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20년 이상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제외(삭제)되어야 합니다.

2) 1.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1981년~1984년 6월 30일까지는 수입 곰에 대한 수입허가 용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입 곰의 85%정도가 이 기간에 수입되었습니다.

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중 (야생조수 인공사육 신청서)에 의하면, 1992년 2월 24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입허가 용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수입 곰에 대하여 모두 재수출용이라고 하고 있다.

※ 위 법률을 적용하면 수입 곰의 85%정도가 수입허가 용도가 없는 곰입니다. 또한 1992년 2월 24일 이전까지 사육하던 곰들도 수입허가 용도가 없는 곰입니다.

○ 사육곰 담당부서의 정책 일관성 부족

사육곰 담당부서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사육곰에 대한 규제완화방안 등을 토의하여도 일관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여 몇 년 동안의 토의 및 간담회 등이 아무런 소용없는 행정낭비만 초래하였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

CITES협약에 의하면 곰 등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해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자국내 거래(상업목적)등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국제거래 (밀수, 외국에서의 보신관광)을 하였을 경우 ‘제2차 페리수정안’에 의해 무역제제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곰 이용현황

‘제3차 곰 부위 교역에 관한 심포지엄’ (1999년 10월 26~28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년 야생 곰 20,000~22,000마리를 사냥하고 있으며, 일본도 매년 1500~2000마리 정도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7,000마리 사육곰 중 약 3,200마리의 곰에서 약 7t의 마른 옹담을 채취하여 4,000Kg은 국내소비하고 3,000Kg을 한국과 일본 등에 판매하게 해달라고 CITES 관계자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구와 러시아·동남아등에서도 야생 곰의 사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육곰보다 늦게 수입한 오소리·타조·뉴트리아 등도 기타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야생 곰의 피를 채취하여 각종 성인병(당뇨병·신장병·골다공증·비만)을 고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 실현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 북해도 노브릿지 곰 사파리농원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사진자료 첨부) 2004년 2월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입장료 2천5백엔(한화2만5천원)을 받고 관람객을 유치하여 현지에서 곰으로 이용되는 식용·약용·가공품 및 곰고기 요리음식을 판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가축으로 인정 되지도 않고, 사육곰에 대한 각종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사육곰은 2005년도 10,000마리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나열한 내용에서 보듯이 사육곰은 야생동물이 아닌 기타가축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중국 일본 등이 곰에서 신약물질개발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한의학을 부정하는 미국에서 조차 야생 곰에서 신약물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수백여 년 동안 쓰인 옹담(사육곰)에 대해 규제만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약물질 한 가지를 개발하면 수조원의 부가가치를 얻는다합니다. 한국의 사육곰도 의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전국사육곰협회 회원농가의 요구사항 !

1.기타가축으로 분류된 오소리·타조·뉴트리아등과 같이 사육곰도 농림부로 이관하여 기타가축으로 분류되어야만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사육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사육곰은 기타가축으로 지정 되어야한다.

.....

금사육정책에 대한 토론회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2. 사육곰의 성숙으로 도달하는 연령을 5년으로 보고 있으나 용도변경은 10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농가의 사육곰 사육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잡종화된곰, 숫곰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곰의 용도변경 연령을 5년으로 낮추어 주어야 한다.

3.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시 사육곰 고기를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기를 활용하여 더 많은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타조(환경부 고시 제2001-27호 재수출용도로 수입한 조수중 식용 또는 가공품의 재료로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한 조수)와 같이 환경부 고시로 용도변경된 사육곰은 식용으로 해주어야 한다.

4. 현재 수출입이 금지된 웅담이 시중에 난무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필요하다. 관세청 및 식약청의 단속과 공항및 항만을 통한 입국시 검색을 강화하여 밀수된 웅담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 밀수된 웅담이 국제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제2차 페리수정안□□에 의해 무역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국 곰사육정책의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

1. 들어가며

현재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반도 깊은 산 곳곳에는 곰, 호랑이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드넓은 공간을 뛰어다니며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채 백년도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옛날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존재가 되었고, 몇 마리가 남아있다, 없다 논란이 되던 곰은 결국 멸종이 되어 지금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와 지리산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사람들과 함께 지구생태계를 이루던 야생동물들은 서식처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고, 이에 위기를 느낀 지구촌은 국제협약 등을 만들어 멸종위기종을 정하고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992년 리우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각국의 실무그룹이 세계 석학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무엇이 21세기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인가?" 석학들의 답은 생물종 다양성과 기후온난화의 위기를 들었다. 이제 생물종의 감소는 지구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온 세계가 인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보신을 위하여 야생동물들을 무분별하게 포획, 도살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육’이라는 이름으로 철창 안에 가두어진 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죽어갈 날만 기다리는 ‘곰’ 들이 있다. 바로 ‘사육곰’ 들이다. 과연 무엇이 야생에 있어야 할 맹수인 곰들을 비좁은 철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한국에도 지금 1600여마리의 곰들이 사육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10살이 되면 ‘웅담’ 을 사람들에게 헌납하기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 도살될 운명이 된다. 물론 이에겐 정부의 정책적인 이유, 사육농가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이 정책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2. 한국의 곰사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1) 정책 목표가 이미 상실되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곰이 수입되게 된 시기는 1970년대로, 관람과 연구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농림부에서 사육곰 재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금사육을 허가하였으며, 1985년 7월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모두 493마리의 곰이 유입되었다(“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05.2.10일 폐지)” 에 의거).

이후 1993년, CITES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멸종위기종에 속한 동물들의 국제거래가 금지되어 수입이 금지 되었고, 당연히 원래 사육 목적이었던 재수출은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9년 2월부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곰을 처리할 있는 연령기준을 그 종류별로 24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정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사육곰 농가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구로 2004년도에 「야생동식물보호법」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사육농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수입한 곰은 종전과 같이 처리기준을 적용(예 : 반달가슴곰 24년)하되 그 개체로부터 증식된 곰은 처리기준을 10년으로 낮추어 적용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확정·시행하게 된다.

이렇듯 원래 한국의 사육곰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사육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2)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기했듯이 지금 세계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약들을 만들어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CITES 가입 당시 한국 정부는 한약재로 쓰이는 웅담과 사향에 한해 국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속서 II의 "곰과 전종" 및 "사향노루속 전종"은 3년간 유보한 바 있으며, 유보기간은 '96.10.6일자로 만료되었다. CITES 가입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법령을 정비하고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97년 6월 짐바브웨에서 열린 제10차 CITES당사국총회에 참석 '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사항' 을 촉구하였으며, 99년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 3차 곰부위 교역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육곰 정책은 한국의 보신문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CITES 협약이 국내에서의 거래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있는 곰을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정책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타 정책과의 모순이다

지금 지리산에는 1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야생 적응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곰들은 원래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곰들이 아니라 반달가슴곰의 증복원을 위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들여 수입해온 곰들이다. 환경부에서는 주변 민가나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대응 지침까지 내려주며 반달가슴곰 증복원 사업이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하고 있다.

2년전인가, 한 TV방송에서 ‘한국에는 수천마리의 곰들이 살고 있다’ 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곰이 멸종된 줄 알았던 곰들이 수천마리나 있다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었다. 그런데 그 곰들이 웅담 채취를 위해 철창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같은 반달가슴곰인데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로 예산을 들여가며 수입해오고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소나 돼지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정책 현실은 얼핏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4)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녹색연합은 지난 2005년 8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웅담 및 사육곰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응답자의 87.1%가 반대했고, 74.9%의 응답자는 ‘곰이 가축으로 사육될 수 없는 동물’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웅담거래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3.4%였으며, 응답자의 95.6%는 웅담을 구입한 적도 없고, 구입할 의사도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58.9%)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거리 캠페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녹색연합이 진행하는 ‘사육곰정책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으며, 위에 예를 들은 TV방송 인터넷 게시판에는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의 시민들이 사육곰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렸었다. 물론 일부 보신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야생동물인 곰들이 사육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5) 보신문화를 부추긴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사육곰 농장 방문과 웅담 구매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관광객들이었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다. 더 심각한 사실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예 여행사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들여오는 웅담관련 제품들은 세관에서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보신문화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면 웅담에 대한 추앙은 ‘동의보감’ 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동의보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기록된 바와 달리 '웅담은 곧 만병통치약' 혹은 '웅담만이 유일한 약'이라는 과장된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간을 보호하는 웅담의 기능이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간에는 무조건 웅담이 최고다'라는 식의 '의학적 상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웅담은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많은 약제의 단지 한 가지 종류에 불과할 뿐이다.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으로 해열제 및 해독제로 쓰이는 약제는 64종, 중앙치료에는 43종, 위 기능 활성화제는 19종, 간 기능 활성화제는 8종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살아있는 곰의 웅담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육곰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철창에 가두어져 길러지고 있는 동물은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이 아니라 ‘고기’ 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웅담이 의학적인 목적보다 보신문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녹색연합에서 실시한 한의사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2005년 일반 국민들 조사와 함께 한의사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웅담처방을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93.1%)이었고, 그 이유로는 웅담 대신 처방할 수 있는 약재가 있기 때문(28%),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27%), 멸종위기 동물의 부위이기 때문(19.3%)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웅담의 효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할 수 있다 29.2%, 효과가 떨어지지만 대체할 수 있다 45.2%)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은 22.2%. 특히 한의사들은 일반인들이 건강 혹은 약용 목적으로 한의사 처방 없이 웅담을 개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3.3%)

2. 사육곰정책 관련 녹색연합의 활동들

녹색연합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사육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녹색연합은 지난 십 수년 간 밀렵감시, 물범 보호활동, 고래 보호활동, 야생동물과 친구하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주요하게 진행해 왔으며, 사육곰 대응활동 또한 이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 활동은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인 WSPA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1) 웅담제품 밀거래 실태조사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중국 곰농장과 국내 약재시장, 인터넷 전자상거래, 곰농장을 대상으로 웅담제품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웅담제품이 국내에서 불법거래 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국내 곰농장을 통해 웅담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조사는 중국 곰농장과 한국에서는 웅담이 거래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약재시장, 전자상거래 그리고 곰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총 163곳의 약재시장을 방문했고, 4차례에 걸쳐 전국 10곳의 곰농장을 조사했다. 주로 탐문조사방법을 택했으며, 구입가능 여부와 가격, 원산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웅담 >

- 녹색연합은 모두 163곳의 상점을 방문, 방문한 곳의 38%인 62곳에서 웅담이나 웅담으로 만든 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형태는 웅담을 통째로 말린 것, 쓸개즙으로 만든 가루분, 캡슐 등이며, 웅담 제품은 중국(41곳)이나 러시아(13곳)에서 밀수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10곳의 곰농장을 방문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곳에서 웅담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달가슴곰이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래되는 반달가슴곰은 24년생 이상이 아닌 곰들로 이는 밀도축에 해당한다. 곰농장을 통한 웅담 거래는 구매자가 참석한 가운데 곰을 도축하고 웅담을 판매하고 있었다.
- 2003년 8월 중국 동북성에 위치한 8개의 곰농장을 방문하였으며 모두 4,793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팀은 연변지역에 위치한 곰농장 6곳을 방문했는데, 곰농장 직영 판매점과 연변 내 약방 그리고 공항에서 손쉽게 웅담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웅담의 90%가 가루분 형태였지만 그 외에 차나 웅담주도 판매하고 있다.

웅담 판매상들의 주요고객은 한국 관광객들로, 백두산 관광상품 일정에 곰농장 방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문에 기념품으로 응답을 구입 친척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었다.

연길국제공항에서 응답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한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판매되는 응답제품은 거의 살아있는 곰에게서 빼낸 쓸개즙으로 만든 것이다.

---- 2004년 9월, 응답 밀거래 현황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2) 중국의 사육곰 실태조사

2005년 9월, MBC와 함께 중국의 사육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변에 있는 곰농장 3군데, 재래시장, 관광상품 판매장 등을 방문하였다. 조사에서 대부분의 구입자가 한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곰농장에 갇힌 사육곰>

3) 곰의날 캠페인, 사육곰정책 폐지 서명운동 등 다양한 대국민홍보

- 반달가슴곰이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329호)로 지정된 날(1982년 11월 4일)을 기념하여 2005년부터 11월 4일을 ‘곰의날’로 정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지구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을 기해 사육곰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버스 정류장 옥외광고 등을 통해 공모한 사육곰 살리기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함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선유도에서 진행된 사육곰 캠페인>

4) 한의사 및 일반 국민 설문조사

‘응답 및 사육곰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조사’ 를 위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5년 8월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과(8월 16일-17일), 한의사 418명(8월 11일-12일, 16일-17일)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으로 진행하였다.

5) 한의사협회, 본초학회 등과 협력

- 응답을 대치할 수 있는 식물(허브) 개발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한의사협회와 본초학회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6) 환경부, 사육곰 농가협회와의 간담회 등

- 이 정책의 주요 책임자인 환경부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이 정책의 피해자인 농가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농가들의 입장을 들어보았음

3. 사육곰을 ‘가축’ 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1) 법적 근거가 야생동물임

2005년 3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내 사육곰 관리에 대한 환경부 입장’ 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가공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육곰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지정되어 있는 등 특수성이 있고 또한 사육곰은 가축이 아닌 만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승인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80년부터 1985년 6월까지 수입된 500여마리의 곰이 1,600여마리로 증식되어 농가 등에서 사육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여 인공사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곰 보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육곰이 억제 또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사육곰은 비록 인간에게 사육되고 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야생동물로 분류되고 있어 그 관리와 거래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이다.

2) 야생동물은 현재 서식 조건이 아닌, ‘본래의 태생’ 으로 구분되는 것

철창 안에 가두어져 인간에게 사육되는 곰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야생에서 온 것이니만큼 당연히 야생동물이다. 만약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지면 다 가축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에 야생동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야생성을 잃어버려 야생동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가축으로 인정하여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들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발상이다. 우리 안에 있는 곰의 웅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야생 상태의 곰을 사려 보신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다.

4. 사육곰 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

1) 우선 사육곰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곰사육 정책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 그리고 궁극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곰사육 정책의 폐지를 위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책 폐지에는 농가 보상 등 많은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것은 정책 방향을 세우고 함께 대안을 세워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이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다. 완전한 폐지까지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폐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농가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점점 더 늘어갈 것이며, 개체수 또한 점점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2) 사육곰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이 정책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아마 사육곰 농가들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그들의 피해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사육곰 정책의 폐지 결정을 하더라도 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환경부 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원래의 소관 부서였던 농림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또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농가들과 협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곰 관리 문제, 관련 법의 개정 문제 등

정책 폐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의 증식을 막고 자연사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개체수를 감소시키면서 사육곰들을 없애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방안에는 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을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곰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서도 또한 농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소규모 농가들의 곰들을 합쳐가면서 사육곰 농장 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 그래야 관리가 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최소한으로 줄여진 농가에 정부는 사육곰 관리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보호 구역을 만들어 사육곰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인데, 이는 장소의 문제 등 만만치 않은 조건들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빌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4)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증대 노력 / 법개정 등 제도적인 노력

이 정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야생동물들의 희생처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OECD 가입국가, 당당한 선진국 반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환경지속성’ 등 환경평가에서는 늘 창피할 정도의 하위 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식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 때문일 것이다. 국제공항에서 CITES 관련 홍보문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 매년 로드킬로 죽어가는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성행하는 밀렵 등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환경부내의 담당자는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바뀌고, 이는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갖지 못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어떤 동물 종은 관련 전문가가 없어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환경 문제는 물이나 공기 오염 등의 사후 처리 문제에서 자원관리나 생태계 보전이라는 근본 대책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내의 관련 부서의 강화와 전문 담당자 배치 등 행정 체계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법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제반의 홍보와 캠페인, 정부 차원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곰사육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사례

데이브 에스탐(WSPA 야생동물팀장)

■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 1981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동물복지단체.
- 사회와 야생에서 고통받는 동물의 보호활동.
- 전세계 12개 지역사무소.
- 140개 국가 650여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



Bear Farming Overview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Bear farming countries

- China (8000 bears)
- Republic of Korea (1400 bears)
- Vietnam (4000 bears)



Problems with bear farming

- Illegal trade
- Conservation of bears
- Animal protection
- International criticism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Illegal trade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Illegal Trade

- Bear bile from farms in Asia are being found on sale illegally around the world.
- Illegal bear trade is common in:
 - USA
 - Korea (China to Korea, USA to Korea)
 - Canada
 - UK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Conservation of Bears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Conservation of Bears

- Wild bear populations are declining because of the demand for bear bile.
- Bear farming increases demand for bear bile.
- Legal products in bear bile from farms makes it impossible to stop trade in wild bears.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Animal Protection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imal Protection

- Keeping wild animals in captivity causes severe animal welfare problems.
- WSPA believes it is impossible to farm bears humanely.
- Sends mixed messages to public about animal protection.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International Criticism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International Criticism

- Currently mainly focused on China.
- Lots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press and television.
- EU Declaration against bear farming in China.
- UK Minister makes statement against bear farming.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Vietnam – ending bear farming

- Vietnam government recognise the problems of bear farming.
- Vietnam government phasing out bear farming.
- Signed MoU with WSPA to implement.



Vietnam – ending bear farming

- The phase out of bear farming includes:
 - Microchipping of existing bears.
 - Stopping further breeding of bears and poaching of wild bears.
 - Gradual reduction in number of captive bears.
 - Wide scale public awareness to reduce consumption.
 - IT IS A LONG TERM PROJECT!



What about Korea?

- Vietnam model has been successful so far.
- We can learn from this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Vietnam.
- We can learn from Vietnam but ...

Korean problem needs a Korean solution!



Summary

- Lots of problems with bear farming.
- Vietnam government have taken action.
- Korea can learn from this but it must formulate its own strategy including everyone involved.
- WSPA and GKU are available to help.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Suggested next step

Agree a long term objective to end bear farming.



Thank you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CITES와 한국의 금사육정책

김효정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1. CITES 협약 개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한 동·식물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동·식물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야생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협약이다.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1075년 7월 1일 발효되어 30여년의 역사를 갖는 가장 오래된 환경 협약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6년 12월 현재 당사국은 167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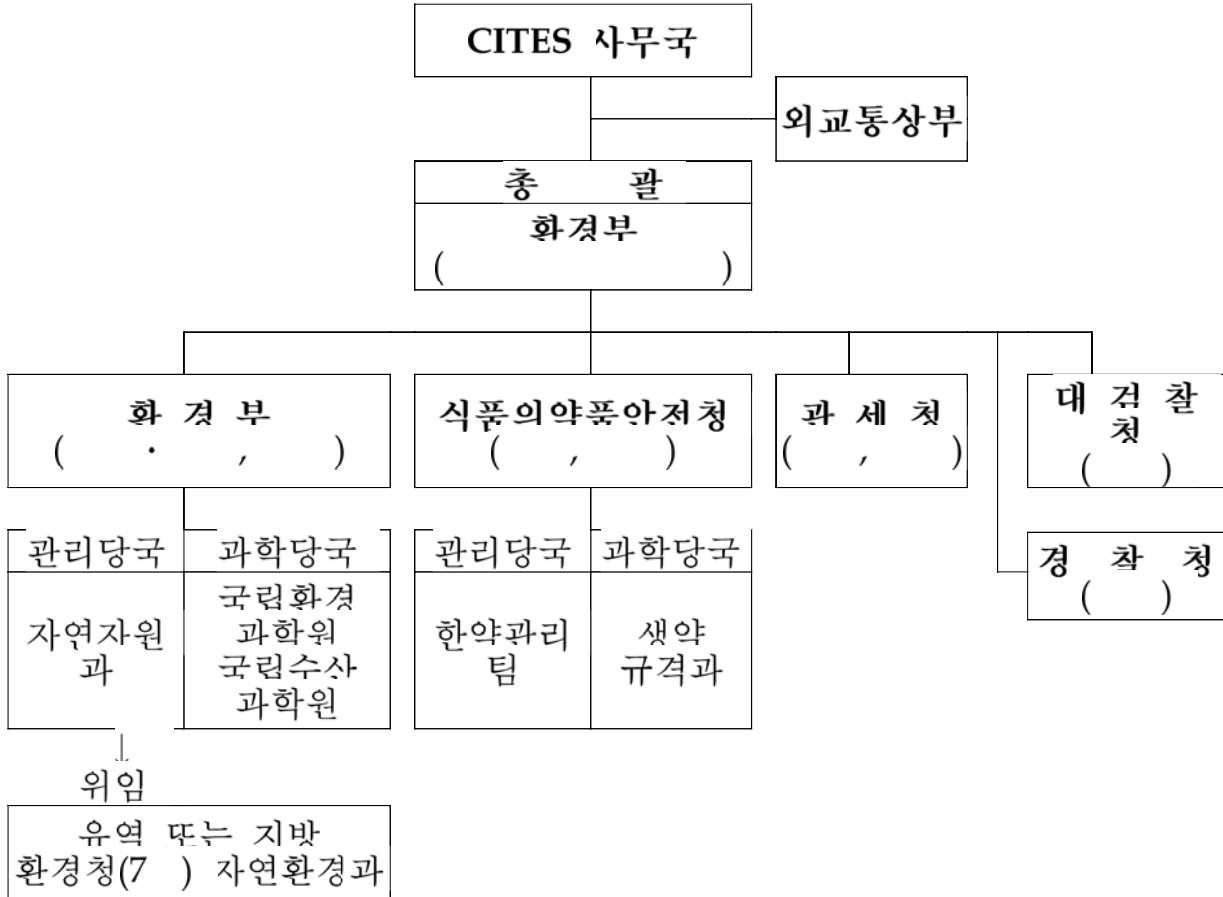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규제대상 동·식물을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하여 수출입시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 I에는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나일악어 등이, 관리당국의 허가에 따라 상업목적의 수출입이 가능한 부속서 II에는 천산갑, 미국산삼 등의 동식물이, 자국의 특정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부속서 III에는 인도의 북방살모사 등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당국으로서 수출입 허가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에 따라 옹담, 사향 등 한약재로 쓰이는 18종의 품목을 관리하며, 그 외의 종은 모두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관세청은 세관에서 CITES 허가서의 대조를 통한 품목확인 및 밀수품목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지원을 하는 과학당국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식약청 생약규격과가 지정되어 있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국내 CITES 관리 체계 >



2. CITES에 의한 우리나라의 곰 거래

곰의 경우 곰과에 속하는 전종이 CITES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CITES 가입 이후 응답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다(Traffic east asia 보고서, 2002).

<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곰 >

부속서	해당종
부속서 I	자이언트 팬더, (), (), 칸달가슴곰
부속서 II	부속서 I 는 제외한 곰과 전종(Ursidae spp.)

* 부탄, 중국, 멕시코, 몽고 개체군만 해당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에서의 곰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물원이나 서커스 등 관람용과 응답 등 형태의 곰 부위 거래가 그것이다. 국내 CITES 업무 분장에 따라 관람용은 환경부에서, 대부분의 곰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것이다. 2003~2005년간 우리나라에서 CITES에 의하여 수출입 허가를 받아 거래된 곰은 다음과 같다.

< 2003~2005년간 CITES 곰 수입 허가>

년도	부속서	종명	상태	수량	단위	원산국	수출국	용도	출처
2003	II	<i>Ursus Arctos</i>	응답	2.881	kg	러시아	러시아	상업	야생
2003	II	<i>Ursus Arctos</i>	응답	0.633	kg	러시아	러시아	상업	야생
2003	II	<i>Ursus arctos</i>	산 개체	5	no	러시아	러시아	순회전시	인공증식
2004	I	<i>Ursus thibetanus</i>	표본	1	no	중국	중국	교육	인공증식
2004	I	<i>Ursus thibetanus</i>	산 개체	2	no	북한	북한	동물원	인공증식
2004	I	<i>Ursus thibetanus</i>	산 개체	6	no	러시아	러시아	야생용	야생
2004	II	<i>Ursus arctos</i>	산 개체	3	no	러시아	러시아	순회전시	인공증식
2005	I	<i>Ursus arctos</i>	산 개체	7	no	러시아	러시아	순회전시	인공증식
2005	I	<i>Ursus thibetanus</i>	산 개체	6	no	몽고	몽고	동물원	인공증식
2005	I	<i>Ursus thibetanus</i>	산 개체	6	no	러시아	러시아	야생용	야생
2005	II	<i>Ursidae</i>	응답	8.738	kg	러시아	러시아	상업	야생
2005	II	<i>Ursidae</i>	응답	1	kg	러시아	러시아	상업	야생

< 2003~2005년간 CITES 곰 수출 허가>

년도	부속서	종명	상태	수량	단위	수입국	원산국	용도	출처
2003	II	<i>Ursidae</i>	가죽제품	32	no	홍콩	모름	교육	압수품
2005	II	<i>Ursus arctos</i>	응답	2	kg	홍콩	러시아	상업	야생
2005	II	<i>Ursus arctos</i>	산 개체	2	no	러시아	러시아	순회전시	인공증식
2005	II	<i>Ursus arctos</i>	산 개체	5	no	러시아	러시아	순회전시	인공증식
2005	II	<i>Ursus maritimus</i>	산 개체	1	no	중국	중국	동물원	인공증식

서커스 등 순회공연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일부 외국산 응답류의 재수출 사례를 제외하고는 곰의 수출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곰은 CITES에 의해 거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CITES 해당종의 수출입 허가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곰과 그 부위의 CITES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관에서 적발된 불법 거래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4~2006년 CITES 불법거래 적발현황(관세청) >

검거일자	품명	원산지	적출국	수량	단위
2004.01.15	응답즙	중국	중국	1	통
2004.02.03	응답분	중국	중국	1900	캡슐
2004.02.13	응답분	중국	중국	20	병
2004.02.13	응답분	중국	중국	1.2	KG
2004.02.23	응답분	중국	중국	5	병
2004.02.24	응답분	중국	중국	1.8	KG
2004.04.04	응답분	중국	중국	13	병
2004.04.26	응답	러시아	러시아	240	그램
2004.05.31	응답분	중국	중국	24	개
2004.05.31	응답분	중국	중국	90	개
2004.06.15	응답분	중국	중국	740	g
2004.08.03	응답분	중국	중국	0.51	KG
2004.09.13	중국술()	중국	중국	3	병
2004.11.13	응답	중국	중국	100	g
2004.12.03	응답분	중국	중국	192	병
2004.12.26	응답분	중국	중국	0.3	kg
2005.02.11	응답주()	중국	중국	6	병
2005.02.11	응답분	중국	중국	10	개
2005.03.30	응답분	중국	중국	17	개
2005.04.13	응답분	중국	중국	11	병
2005.05.03	응답()	중국	중국	5	병
2005.05.15	응답분	중국	중국	0.05	kg
2005.06.09	응답분	중국	중국	3920	그램
2005.06.09	응답분	중국	중국	10	병
2005.06.19	응답분	중국	중국	0.5	kg
2005.09.05	응답	미국	미국	6	개
2005.10.02	응답분	중국	중국	0.05	KG
2005.10.02	응답분	중국	중국	0.05	KG
2005.10.24	응답분앰플	중국	중국	10	병
2006.01.23	응답분	중국	중국	1	kg
2006.02.13	응답분	중국	중국	1	KG
2006.02.16	응답분	중국	중국	0.1	KG
2006.02.21	응답분	중국	중국	0.1	KG
2006.02.22	응답분	중국	중국	10	병
2006.02.25	유사응답분	중국	중국	10	병
2006.03.03	응답분	중국	중국	0.1	kg
2006.03.08	응답분	중국	중국	10	병
2006.03.15	응답	기타	러시아	1.733	kg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6.04.11	응답분	중국	중국	10	병
2006.04.18	동물성생산물()	중국	일본	0.55	KG
2006.04.19	응답분	중국	중국	9	개
2006.04.25	응답	러시아	중국	0.624	kg
2006.05.08	응답분	중국	중국	2000	g
2006.05.08	응답분	중국	중국	1.24	kg
2006.05.13	응답분	중국	중국	2.53	kg
2006.06.08	응답분	중국	중국	1.5	KG

이러한 수출입 및 불법거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응답의 주요 소비국으로서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응답의 효과에 대한 맹신과 보신문화 등 한국의 기존 이미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CITES 가입 당시부터 한약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부속서Ⅱ 해당 품에 대하여 3년간 유보조치를 하였고, 응답 이용을 위한 곰 사육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도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관리에 있어 보전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CITES 에서의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이용

CITES는 기본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거래 제한을 통한 보전”을 본질로 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보호만을 강조하는 협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CITES 협약의 서문에서는 “야생동·식물이 현세대 미 후세대를 위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지구 자연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적·과학적·문화적·여가적·경제적 측면에서 야생동·식물의 점증하는 가치의 의식”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8차 당사국총회 결의문(Conf. 8.3) “야생동물의 거래가 가져오는 이득에 대한 인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야생동·식물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은 수준에서의 상업적 거래는 종과 생태계 보전 및 지역 주민의 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CITES 내에서는 이와 같은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속서Ⅱ, Ⅲ종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부속서Ⅰ 해당종의 경우에도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먼저 부속서Ⅰ 해당종의 배양소 등록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배양소를 사무국에 등록하고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동물을 거래할 경우 부속서Ⅱ종과 같이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허가서 출처난에 D로 표시). 영국, 캐나다의 매(*Falco spp.*),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악어류(*Crocodylus porosus*, *Crocodylus siamensis* 등) 생산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설내의 동물들이 합법적으로 획득·관리되는 것만으로 등록요건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시설의 등록이 종의 야생개체의 보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전략을 설명 가능하여야 하며, 시설이 모든 단계에서 인도적인(잔인하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서 서식하는 낙타과 동물인 비큐나는 그 털이 오랜기간 고급 의류의 원료로 값비싸게 거래됨에 따라 극심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CITES 종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이후에, 반야생으로 방목한 뒤 살아있는 상태에서 깎은 울, 의류 등에 대해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부속서 I 인 아프리카 코끼리(*Loxodonta africana*)의 경우 보트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 특정국가의 개체군에 대하여 비가공된 상아, 가죽 등 제한된 품목의 거래를 인정하거나, 부속서 I 의 사냥기념품의 거래를 인정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위 사례들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곰사육에 있어서도 야생종의 보전, 사육농가의 현실 및 곰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곰의 학대방지와 인도주의적 처리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 국민의 인식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야생동물의 상업적 이용과 곰사육정책

-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야생동물에게 있어 가장 잔혹한 것은 자연 재앙이 가해지거나 생태 현상에 따른 죽음과 고통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 가장 잔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기 고유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순간부터 고유의 본능은 철저히 차단되고 인간의 편의 위주로 길들여지도록 강요받는다.

야생동물의 이용은 인간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주를 차지하는데, 식용과 하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기본 생존과 전혀 상관없는 오락·관광용으로써의 이용에까지 이른다.

■ 야생동물의 가축화

육식습관에 길들여진 인간은 보다 더 많은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 순화가 용이한 동물들을 가축화시켜서 개량의 과정을 거치며 이용하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 돼지, 닭을 들 수 있다.

가축화한 동물은 인위적인 도태(淘汰) 압력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결과로 변이(變異)의 폭이 증가되고, 생리적인 특성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⁴⁾

이렇듯 수천 년 전에 가축화가 되어 개량과 개량을 거쳐 가축으로 정착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능이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아, 돼지의 경우 코로 땅을 파는 버릇 등이 있어 돼지들은 콘크리트 등에서의 생활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된다. 또한 비좁은 공간과 무리한 일상은 돼지들로 하여금 서로 상해를 입히게 되어 태어난 지 10일 이내에 꼬리를 잘리는 등 신체적 손상을 당하게 된다.

가축화의 역사가 길지 않거나 본능적으로 가축화 자체가 매우 가혹한 형벌인 동물들도 많다. 모피에 사용되는 밍크 등 수중동물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본능적인 몸짓을 반복하며 심한 정신병적 징후를 나타낸다. 시속 90km로 드넓은 평원을 달려야 할 타조는 시원한 달리기 한번 할 수 없는 사육공간에서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본능이 억제 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의 경우 겨울이면 굴이나 큰 나무 구세통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사육되는 곰에게 이러한 본능은 주어지지 않아 곰의 신체리듬은 혼란 그 자체이다. 그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야생동물종이 가축화의 과정에서 정신병적 징후와 신체적 가혹행위를 겪게 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

4) 네이버백과사전 - 가축화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되는 야생동물들은 이런 기본적인 본능 억제는 물론이려니와 다루는 그 과정도 매우 가혹할 수밖에 없다.

야생동물이란 인간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기 힘든 동물이다. 그러한 동물들을 인간의 편의 위주로 제어하려 하니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과 이동과 활용의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수단들은 동물들으로써는 최악의 고통인 것이다.

동물을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쉽게도 우리사회에서는 동물들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문제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논란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한 종의 멸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기준을 두어야 한다.

2001년 한국 정부는 타조, 뉴트리아 등을 포함하여 오소리를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오소리를 가축화함으로써 밀렵을 예방하고 오소리의 담즙성분이 곰의 웅담 성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여 보호동물인 곰의 웅담 대체효과를 기대한다 하였었다.

그러나 2001년 이전과 이후 오소리의 밀렵 문제는 전체 밀렵의 문제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야생동물밀렵 문제는 그 자체로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공급이 부족한 웅담(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성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오소리의 가축화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정부의 목적처럼 경제적 성과도 그리 높이지 못한 채 야생동물 종에게 지속적인 고통만 가중시키는 인공 사육의 반열에 올려놓은 셈이 되었다.

■ 야생동물 식용화의 이면에 있는 보신 의식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목초지 부족으로 인하여 목축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늘 부족했던 육류 공급은 왜곡된 식문화의 그늘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취식하는 행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더불어 고영양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신 행각은 더욱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상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신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해서 스스로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금년 11월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본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하여 온 고양이 식용·약용금지 법안을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농림부와 국회 입법조사관 및 국회의원들은 전문가 의견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법안을 거부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응답이 중국에서 대량 밀수입되는 현실로 보아 곰 사육을 현실화시켜서 외화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양 부처 모두가 국민들의 왜곡된 보신의식에 대해 암묵적인 동조를 함으로써,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밀렵으로 희생 당하는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 곰 사육 정책의 허구

정부의 곰 사육 정책은 의학적인 면에서나 야생동물보호측면에서도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채 악순환만 되풀이하며, 세계적으로 중국 외 유래 없는 곰 사육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관광 곰 농원도 현재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어서 멀지 않은 때에 폐쇄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모피소비 국가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국내 모피사육 산업은 모피파동과 더불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채 토끼농장 몇 군데를 제외한 모든 농장이 폐쇄되었다. 그와 더불어 값싼 모피의 공급처인 중국에서 대량 유입되고 있다.

곰 사육은 어떠한 것인가? 값싼 야생동물을 먹기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보신관광 및 밀수입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 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곰에 대한 정서는 매우 각별하여서 곰 사육의 산업화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저서 경제성도 크게 전망할 수 없다.

결국 곰을 식용으로 인정해주어도 값싼 중국 및 동남아 제품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국내 곰은 식용으로 인정하면서 외국에서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의 형편성에도 맞지 않게 되므로, 결국 국내 곰 사육 산업은 정상적 발전을 기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보신주의자들의 채액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 건강생활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만, 탐욕적 욕구에 의한 보신주의는 정도를 가기가 힘들다. 국민들의 왜곡된 보신의식은 정책 선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므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곰 사육 정책 폐지에 적극 임하여 적절한 농가 보상 후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말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아야 한다.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언론에서 바라보는 곰 사육정책

-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최근 몇 년 째 사육 곰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사육 곰에 대한 도살 연한을 10년으로 낮추었음에도 사육농가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현재 상황이 과연 개선이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논의가 계속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육농가의 불만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열악한 사육 조건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또 곰을 사육해서 응답을 판매하는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빠른 시일 내 곰 사육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 가운데 현실성이 낮은 것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정부가 1600마리를 전부 매입해 집단 사육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도살하지 않고 자연 수명을 다하도록 사육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동물 보호 차원, 생명윤리 차원에서는 최상의 방안이겠지만 문제는 1600마리를 사들이는 비용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1600마리를 기를 사육시설과 그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일도 수월하지 않다. 많은 곰을 모아놓았을 때 안전 문제, 자연 훼손도 우려된다. 게다가 매년 적지 않은 사육비용이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곰의 개체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기한도 없이 막대한 비용을 끝없이 쏟아야 한다. 1600마리를 누가 사육할 것이냐도 문제다.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문제인데,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 따져봐야 한다. 보존 가치가 있는 야생동물이 아니라면, 개체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매입한 뒤 일률적으로 불임시술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육 시한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도살을 하지 않는다면 20~30년은 계속 사육을 해야 한다. 사육시설 설치와 사육비 문제에 불임시술 비용이 추가된다. 또 불임시술을 할 것이라면 굳이 정부가 집단 사육할 이유는 없다. 사육비를 지원한다면 개별 농가에서 실시해도 된다.

정부가 매입해 집단 사육하되 10년생 이상이면 도살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많은 비용을 들여 매입하고 사육시설을 지은 뒤 10년 이상 사육을 계속해야 한다. 어차피 도살할 것이라면 정부가 매입해서 집단 사육할 이유도 없다.

결국은 개별 사육농가에서 지금처럼 사육을 하도록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먼저 도살 연한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곰이 자라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농가에서 응답을 생각한다면 5년 미만의 덜 자란 곰은 농가에서도 도살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도살 전면허용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도살 연한을 10년으로 바꾸었지만, 도살 자체를 허용했다는 면에서는 5년이건, 10년이건, 전면 허용이건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전면 허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사육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전면 허용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곰을 확인한 다음 응답을 구입하려 할 것이고, 농민들은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곰을 도살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농가에서 한꺼번에 도살을 할 경우 응답 가격은 하락해 사육비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정부가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곰을 매입하고,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 그 만큼의 예산을 농가에 지불해야 한다.

즉 정부가 응답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거나 사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응답을 매입하건, 사육비를 지원하건, 정부는 사육 농가에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든지, 몇 년 동안만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빠른 시일 내 사육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한편 정부가 응답을 매입할 경우는 그 응답을 시장에 유통시킬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첨부자료 : 사육곰 관리지침 (자료출처: 환경부, 2005)]

목 차

I. 개 요

- 목 적
- 추진경위

II. 세부 관리 지침

1. 사육곰 개체 관리
 - 관리대상
 - 관리원칙
 - 세부 관리 방법

2. 사육시설 설치·운영
 - 원 칙
 - 세부 설치·운영기준

3. 사육곰의 용도변경 신고 등
 - 기본 원칙
 - 주요 내용

4. 사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 기본 원칙
 - 세부 지도점검 방법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I. 개요

□ 목적

이 지침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6조 제3항 및 제6항,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양도·폐사 신고, 신고자의 보고사항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업무절차를 정하기 위함.

□ 추진경위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05.2.10일 폐지)” 에 의거 ’ 81년부터 ’ 85.6월까지 수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사육
- ‘99.3월에 야생 조수 인공사육허가, 감독상 명령, 인공사육 실적보고, 사육시설 이전신고 등에 관한 사육곰 관리규정 폐지
- ※ 산림청의 야생 조수 관리업무 환경부 이관 : 1999.5.24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에 따라 ‘05. 2. 10일부터 사육곰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이관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 및 사육곰 처리기준 변경 등에 따라 체계적인 사육곰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 마련

II. 세부 관리지침

1. 사육곰 개체 관리

□ 관리대상

- ’ 81년부터 ’ 85.6월까지 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곰과 그 곰으로부터 번식되어 사육중인 곰

□ 관리원칙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육곰 관리 체계 구축
 - 수입·양도·양수, 출생·사망 및 처리 과정별 정보화 관리
 - 사육곰 각 개체별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 사육곰 전자칩 주입 관리

□ 세부 관리방법

- ①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관리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모든 사육곰은 각 개체별로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관리

- 사육곰 관리카드는 사육자 및 지방환경관서가 각각 작성하여 관리
- 작성내용 : 고유번호, 종류, 성, 출생일, 양도·양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근 거 : 법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 별지 제23호 서식

○ 곰 사육자는 보관·제출용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관리

- ‘05년도 1.1일 이전에 수입·양수 또는 출산한 곰은 ‘05.3.31일까지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수입허가서 등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수입허가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작성
- ‘05.1.1일 이후 출산한 곰은 출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작성·제출

○ 지방환경관서는 관할 기관용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관리

- 사육자가 제출한 관리카드 토대로 “관할 기관용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관리(별지 제2호 서식)

○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 시기 및 방법 등

- 사육곰의 용도변경 신고 시,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적법성 입증
-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양도 시, 양도자는 관리카드 사본을 사육곰과 함께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 양수자는 양수받은 곰에 대한 “사육곰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고, 1부는 양도자로부터 인계받은 관리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관리
- 폐사처리 등으로 곰이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사실을 기재한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 지방환경관서는 처리사항 확인 후, 원본은 보관하고 관리카드 사본은 신고자에게 발부(사육자는 사본 보관)

② 사육곰 전자칩 주입·관리 등

- 합리적·체계적인 사육곰 관리를 위해 전자칩 주입 추진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04. 12.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육곰은 정부주관으로 전자칩 주입
- '06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약 4천만원 소요 : 1,600마리 × 25,000원(마취 및 전자칩 비용)]
- '05년 이후 출생하는 곰은 사육자가 전자칩 주입(관리카드에 전자칩 주입사실 기재)
- ※ 사육곰은 출생후 10개월 이내에 사망률이 높은 점을 감안, 10개월 지나서 전자칩 주입

○ 전자칩 주입전 까지 관리 방안

- 사육곰 연령 및 사육장 시설규모에 맞도록 적정하게 수용 관리
- 1~5세 이하 : 사육장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수량 수용(10~20두)
- 6세 이상 : 곰 연령을 2~3년 단위(예 : 6~9살, 9~11살 등)로 묶어서 수용하되, 1개 사육시설 당 최대 4마리 이내
- 각 사육시설마다 수용된 곰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지판 부착(별표 2)

2. 사육시설 설치·운영

□ 원 칙

- 사육곰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 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시설 설치 및 사육환경 유지
- 사육곰의 탈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시설 설치 운영
- 사육곰 및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등의 적정처리 시설 설치
- 기존 사육장은 점진적으로 시설기준을 유지하고, 신규 사육장은 엄격한 시설기준 유지(원칙적으로 신규 사육장은 억제)

□ 세부 설치·운영기준

㉠ 금사육시설 설치 기준

- 금사육자 또는 곰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곰 사육시설 권고기준」에 의한 사육시설 설치
 - 기존의 곰 사육자는 '06년 말까지 “별표1, 곰사육시설 권고기준”에 의한 사육시설 설치 완료
 - '05. 2월 이후 신규로 곰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권고기준을 엄격히 적용
 - 기존의 곰 사육자가 사육곰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자가 반드시 “곰사육시설 권고시설”을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 기존의 곰사육자가 사육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곰사육시설 권고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전

※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양수자 또는 기존사육자가 곰사육시설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곰사육시설 권고기준을 엄격히 적용(양도 신고 불허 등)하여 무분별한 사육시설 확대 방지

㉔ 곰사육장 환경관리

○ 곰사육장은 환경보전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 곰사육장의 발생 오·폐수 등으로 인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적정 처리 시설 설치(퇴비화 시설, 오수처리 시설 등)

○ 곰의 깨끗한 생활환경 확보·유지를 위한 사육장 환경관리 철저

- 곰이 깨끗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생존권리를 누리면서 살아 갈수 있도록 주기적인 사육장 물청소 등 환경관리 철저

※ 지방환경관에서는 사육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3. 사육곰의 용도변경 신고 등

□ 기본 원칙

○ 용도변경 등 사육곰 관리는 ‘사육곰 관리카드’에 근거하여 처리

- 용도변경, 양도양수, 폐사처리 등 사육곰 관리업무는 원칙적으로 사육자와 지방환경관서의 ‘사육곰 관리카드’에 기초하여 처리

○ ‘사육곰 관리카드’ 관리가 부실한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관리

- 사육자와 지방환경관서의 ‘사육곰 관리카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규명한 후 처리

□ 주요 내용

㉑ 사육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가. 법적기준

- 인공 사육곰은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 가능

나. 법적근거 : 야생동물보호법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법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3항

-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불가
-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

○ 시행규칙 제2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제1항

- 인공사육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이 『별표5.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 가능

《 곰의 처리기준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

종	별	처리기준()	
		85 ! 이전 수입된 곰	85 ! 이전 수입 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
큰	곰	25 ! 이상	10 !
반 달 가 슴	곰	24 ! 이상	
늘 보	곰	40 ! 이상	
말 레 이	곰	24 ! 이상	
아메리카 흑	곰	26 ! 이상	

다. 용도변경 승인 처리 절차 등

[1].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용도변경사유서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입 등 허가서 사본
 - ※ 허가서의 분실 등으로 허가서 사본이 없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육곰 관리카드로 갈음
- 용도변경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사육곰 관리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처리 기간 : 7일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2] 승인 처리 등

○ 구비서류 등 적정성 확인

- ‘사육곰 관리카드’ : 관할지방환경관서에 비치된 ‘사육곰 관리카드’ 내용 일치 여부
- 용도계획서 : 용도변경 목적 및 사용내역, 부산물 폐기방법, 처리 장소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 승인 처리시 수의사의 사육곰 건강 진단내용 확인

○ 승인서 교부조건 등

- 용도변경을 승인 하는 때에는 아래 준수사항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여
- 수의사 또는 사육자가 승인내용에 따라 처리
- 곰의 처리는 사육장안에서 하되, 외부에 노출되어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처리

○ 기 타

- 사육자는 곰을 용도변경하여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관할지방환경관서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승인내용 및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 사육자는 “사육곰 관리카드 ‘에 처리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② 사육곰 양도신고에 관한 사항

가. 법적기준

- 사육자가 사육곰을 양도한 때에는 반드시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신고

나. 법적근거 : 야생동물보호법

- 법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6항

-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시행규칙 제23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제1항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

다. 양도 승인 처리절차 등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1]. 양도신고 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구비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입허가증 사본 등)
-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한 경우에 한함)

※ 허가서의 분실 등으로 허가서 사본이 없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육곰 관리카드로 갈음

- 사육곰 관리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처리 기간 : 7일

[2]. 신고 처리 등

○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 양도신고서 : 양도 목적, 양수자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등
- ‘사육곰 관리카드’ : 관할지방환경관서에 비치된 ‘사육곰 관리카드’ 내용 일치 여부
- 신고처리시 사육곰의 질병감염여부 등 건강진단내용 확인

○ 양수자의 곰 사육시설 적정성 여부

- 현지실사를 통해 사육시설의 설치권고 기준 적합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엄격 확인
- 양수자가 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자가 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법정 방지시설 설치 후 처리
- 양수자가 사육곰을 사전에 양도받은 경우로서, 법정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 등 엄격처리

○ 기 타

- 지방환경관서는 양도자의 양도 신고내용이 적합한 때에는 양도신고 필증 교부
- 양수자는 양수받은 사육곰에 대한 ‘사육곰 관리카드’ 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양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육곰 관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관할지방환경관서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수리 내용 및 양수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양수자는 작성한 ‘사육곰 관리카드’에 양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육곰 관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관리

③ 사육곰 폐사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법적기준

- 사육곰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신고후 처리

나. 법적근거 : 야생동물보호법

- 법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6항
 -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시행규칙 제23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제2항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또는 질병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

다. 폐사 신고 처리절차 등

[1]. 폐사신고 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구비서류

-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수의사진단서(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함)
-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사육곰 관리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신고기간 : 폐사 또는 질병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처리 기간 : 즉시

[2]. 폐사 신고처리 등

○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 폐사·질병신고서 : 제출된 자료(사진 또는 수의사진단서 등)를 토대로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
- 질병확산 우려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수의사 등을 대동하여 확인
- ‘사육곰 관리카드’ :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비치된 ‘사육곰 관리카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계획 : 폐사 및 질병여부에 따라 처리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확인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 전염병 등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 질병이 아닌 사고로 폐사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기 타

- 지방환경관서는 사육자의 폐사·질병 등의 신고내용이 적합한 때에는 “폐사·질병신고필증” 교부
- 관할지방환경관서는 신고자가 제출한 ‘사육곰 관리카드’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폐사·질병신고자는 관할지방환경관서가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한 ‘사육곰 관리카드’ 보관·관리
- 관할지방환경관서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폐사·질병 등의 신고수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4. 사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 기본원칙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 실현

-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환경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사육장 출입 및 지도·점검
- 폐기물 처리 등 법적 환경관리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일반적 시설 기준은 권고 및 안내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

○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도·점검 관리체계 구축

- 사육장 확대 방지를 위해 신규 사육장 설치에 엄격한 법적 기준 및 설치권고기준 적용

○ 자율적인 사육곰 및 사육시설 설치 체계 확립

- 처벌 및 규제 위주의 단속보다는 법규·지침 등의 안내 및 홍보중심의 지도·점검 통한 자율적인 실천 관리 실현
- 친환경적인 사육곰 관리의 당위성 홍보 및 사육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율적이고 합목적적인 사육곰 관리 목적 실현

□ 세부 지도·점검 방법

㉠ 관련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 법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6호

-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거나 양도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요구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 가능

○ 시행령 제37조(보고 및 검사)

- 환경부 장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지방환경관서는 지도·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를 활용하여 사육장 및 사육곰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지도·점검 확인사항

- 사육자의 각종 신고사항 미 이행 여부
- 사육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오수·분뇨 처리 및 청소 등 환경 관리포함)
-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육곰 관리(두수) 정확성 여부 등
- 기타 사육장 및 사육곰 관리 등에 관한 법령준수 사항 이행 여부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법적기준 미 이행 및 미흡한 사항 개선조치
- 법적기준이 아닌 단순한 지침위반은 개선권고 처리
-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다만, 위반정도가 법규를 알지 못하여 단순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경미한 사항은 개선 조치

○ 기 타

- 관할지방환경관서는 사육시설, 사육곰 현황, 사육곰 관리카드, 지도점검결과 등을 DB화하여 관리
- 사육자는 사육곰 관리실태를 매 반기마다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고
- 관할지방환경관서는 매 반기 후 익월 20일까지 관련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한국의 금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 붙임 >

1. 곰 사육시설 권고기준[별표 1]
2. 곰 사육장용 표지판 규격[별표 2]
3. 관할기관용 사육곰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4. 관할기관용 ‘사육곰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5. 사육자용 ‘사육곰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6. 곰 사육장 지도·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
7. 곰 사육장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별지 제5호 서식]

* 붙임문서는 생략함